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9 선고 2019가단567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송명희

변론 종결 2019. 11. 21

판결 선고 2020. 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6,92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27. 3,000만 원, 2016. 8. 1. 2억 2,000만 원을 각 지급 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고(이하 '이 사건 대여과 한다), 2016. 7. 27. 그 담보로 광양시 C임야 9, 175㎡ 1) 중 D소유의 29500/73400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7.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받았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기한 내에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2016. 10. 25.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마쳤다.

다. 그 후 피고는 2018. 6. 21. 원고로부터 3억 2,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8. 6. 22. 원고의 요구에 따라 E에게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2018. 6.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3호증, 을 제1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 원금이 228,500,000, 이자가 연 8%라고 주장하면서 그 원리금액을 초과한 3억 2,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초과 지급받은 청구취지 금액을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앞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 합의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청구취지 기재 금액을 이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박혜영

1)2019. 2. 18. F 대 8,855㎡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9. 3. 13. 분할로 인해 면적이 3,863㎡가 되었다.